

제404회 국회
(임시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3월16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6)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15.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1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상정된 안건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2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 2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9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9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9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 13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14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6) 14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14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27
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36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37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45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45
15.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46
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 46
1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46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5)

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3)

(10시07분)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도시개발법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존치부담금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규정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존치와 또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서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존치 대상 시설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3쪽입니다.

존치부담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건축물의 존치를 계획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다시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또 매도하는 경우가 되는데 존치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될 경우 감정가격에 비하여 그 부담액이 낮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지방식은 존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으로 환지방식은 제외하고 수용방식만 적용되도록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존치부담금은 여러 법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여러 법에서 존치부담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항을 보시면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혼용 중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만 포함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 관련 개정법률에 대한 적용 유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에는 11조의2의 개정 규정을 3년 동안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에

서 민간참여자로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그 밑의 표에 보시면 제일 큰 것은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의무화, 총사업비의 10% 이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관 공동사업 공모절차와 운영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 부칙 2조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른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절차 재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나 또 법적 분쟁 등 기 선정된 민간참여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조의2의 개정규정 전체의 적용을 유예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려는 당초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유예 범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 공포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이 조문이 적용되도록 해서 기존의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되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관련이 없는 민간 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절차 등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지난 개정규정의 취지는 그대로 적용되도록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현재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못해서 민·관 공모 사업자의 지위가 불안한 경우의 사업이 현재 11개입니다. 마지막 10번과 11번은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9개는 아직 진행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제2조는 현행과 같이 두되 제3조를 신설해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간참여자가 선정에 관한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제3항부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윤율이라든지 이러한 조항들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제1번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에서 환지방식을 제외하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번 민·관공동출자법인 관련 개정법률에 대한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민관공동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담당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존치되는 시설물 내에서 두 가지 방법 즉 수용을 하거나 환지를 하도록 돼 있지않아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은 수용한 다음에 존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용 자체를 처음부터 예외로 인정해서 이거는 존치물건이니까 그냥 놔둔다 이런 형태를 취합니까,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할 때 수용을 해서 다시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존치하는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에 중요한 기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교시설과 같이 사찰이나……

○金熙國 위원 이해합니다.

그 시설물들도 일단 수용하고 그다음에 보상합니까?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용 안 하고 존치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존치부담금을 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존치부담금 제도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金熙國 위원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수용, 환지 두 개 중에서 환지는 제외하고 수용하는 거는 존치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종교시설이 아닌 개인시설물은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자체로 존치하고 존치부담금을 내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 같은 것도 수용한 다음에 존치부담금 부과합니까?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현재까지는 존치부담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명세서의 내용은 포함을 하되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존치하는 시설물도 다시 매입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개정법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존치되는 시설물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존치부담금만 나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존치부담금만 납부하는 대상 자체가 수용대상인 시설은 그렇고 환지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도 실수를 했고 국회도 실수를 했는데 유예기간을 6개월 줬을 경우에 전체 인허가 과정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했을 때 한 80까지 진행된 이 사업시행주체들에 대한 피해 우려를 계산 못한 거지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측면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지금 11개 업체가 이 법의 개정법률안의 부칙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했으면 아무 피해가 없을 텐데 6개월로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절차상으로는 구제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윤율 상한이나 협약 체결 시 승인절차는 다 개정법대로 인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문성요 실장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문성요 일단은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법,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에는 존치부담금 제도가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는 이게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판교 같은 경우도 개발사업 하다가 중간에 큰 교회가 그대 존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김병욱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하기 전보다 개발 이후에는 당연히 여러 면에서 가치가 올라갈 텐데 타 법에는 이렇게 존치물에 대한 근거와 존치부담금에 대한 이런 게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거를 그동안에 빠뜨린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늦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金熙國 위원 입법 미비.

○김병욱 위원 아무리 입법 미비라도 시점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존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도시개발법은 대개 수용과 환지 방식을 한 절반 정도 합니다. 과거부터 환지방식도 많이 썼기 때문에 환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나중에 다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도시개발사업도 이렇게 수용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존치물들이 있는 그런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제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술하게 많았을 텐데 다 존치를 원하겠지요. 개발되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치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했을 거고 또 다른 법과 달리 부담금도 안 물렸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진즉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실시계획에다가 존치할 대상물을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가치를 나중에 평가해 가지고 그거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존치부담금 제도를 확실히 두어서 다른 법과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 개정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수용할 때는 개발 전의 가격으로 수용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넘길 때는 개발 이후의 가격으로 해서 정산을 해 왔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좀 반영을 해서 처음에…… 맞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수용 전의 수용과 소유권 이전 후에 어떻게 정산을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이 해 왔다고 치더라도 다른 법과 달리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잠깐만,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수용하는 경우에 존치부담금을 정산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존치부담금을

기존에 이 법이 없을 때 존치부담금을 안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안 받고 난 뒤에 존치하고 수용할 때 그거를 정산해서 값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안양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던데 이 310만㎡에 2조 5000억이나 들어가는 국방부 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우선협상자 지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자로 3년 유예기간을 뒤 버리면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도 좀 구제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저 찾아왔는데……

어떠세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현재 안양 박달에 관한 사례는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쪽에서 안양 박달 쪽에 현재 뭐……

○**허종식 위원** 그러면 국토부 쪽에서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소위원장 김정재**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김학용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국토부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두 차례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공모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에 3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런 취지로 왔고, 또 두 번째 보냈을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논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공모 방식을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예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저는 3년 유예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 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아주 잘됐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하면 또 막대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로또 형식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민간 이윤을 상한 또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타당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빨리 통과시켜서 지금 표류되고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여기에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법률로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미 논의돼서 통과되었고 또 시행일이 한 9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집행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경준 위원 잠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입법 당시에 입법 미비된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려를 해서 했다는 겁니까? 기간이 2년, 3년이든지 간에 그런 입법 미비가 없이 잘된 법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핵심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난번에 시행일 관련해서 당시에 6개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고 그때 법안에는 모두 시행이 6개월로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의 신중검토, 이것까지도 신중검토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사업하고 진행돼 있는 사람…… 문제들이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차관님? 그냥 그 법 개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물론 준비하는 분들이 법의 변경에 따라서 하던 사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오늘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지자체를 상대로 아니면…… 지금 소송하는 데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소송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것을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든 뭐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청구는 어디에다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다 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아마 취소권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방치하고 그냥 놔두고 이대로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졌으니깐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적용 유예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의원실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차관님 오셔 가지고 신중검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게, 갑자기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 특정 어디 한 군데 때문에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미 취소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취소가 몇 군데가 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인천 지역에서 취소가 세 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세 군데는

결국 현행법에 따른, 개정 법률에 따른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또 다시 인용을 해 주는 경우에는 취소를 당한 업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 이 법이 이대로 가면 다른 데 더 많은 곳에서 이의 신청, 소송이 나오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 차원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수석전문위원하고 또 저희 방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나왔던 안이거든요, 이 안이 다. 그런데 갑자기 차관님 오서 가지고 신중검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법 적용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적용을 하되 유예기간을 한 3년을 더 두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특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사가 잘 진행되고 그 업체가 그것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면 만약에 몇 년씩 진행하던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몇 년씩 다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피해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법이 시행됐고 또 상당 기간 경과를 했고 또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소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에 미비점이 있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 하겠다고 차관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다시 원래 검토하셨던 대로…… 조금 어색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차관님이 이렇게 좀 어색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하고 국회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정부는 이미

국회에서 만들어 준 대로 집행을 해 버렸는데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로마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로마법의 정신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처리하고 정부는 의회에서 입법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김정재**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차관님, 이 법의 적용유예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자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서범수 위원** 문제는 있으나 차관님 말씀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전에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 곳도 한 서너 군데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대한 형평성 부분 때문에 걸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더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교형량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모아지신 것 같은데요.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차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개월 유예기간이었는데 세 군데가 취소를 한 것 이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3년 유예로 해서 소급 적용이 되면 이 세 군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어떻게 구제를 하든 될 하든 아마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3년 유예로 하면 미지정 지역이 아예 없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6개월로 하니까 미지정 지역 11곳이 잇따라 발생되어서 피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그것을 3년으로 유예를 했어요, 6개월을 3년으로.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그런 곳은 없는 건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이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사업 승인,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면 협상대상자부터 지구 지정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이 3년 내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더 서둘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오섭 위원** 아까 그거는요? 세 군데 구체 방법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구체 방법에 대해서는……

○**조오섭 위원** 예상해 보건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얘기했는데 이때 법이라 함은 옳은 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할 때 아마 그때 LH 사건이 터지고 급히 서둘러서 우리가 그때 시대 현안에 대응하다 보면 꼼꼼하게 못할 때가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행해 보니 그 법에 따라서 세 군데를 취소하고, 막상 시행을 해 보니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오늘 또 열한 군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 공공시행자가 거의 지자체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님이나 군수님들도 받을 동동 구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다들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3년으로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취소를 세 곳이 했기 때문에 사실 차관님이 저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또 그 세 곳은 아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된 법은 고쳐 가지고 과거에 잘못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김민철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거의 다 적용기간을 유

예하는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허종식 위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양 스마트밸리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면 그것 구체방안에서 한 줄 넣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것은 법 안에서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허종식 위원** 거기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 안 보게만 한 줄 구체안으로 넣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확인해 보고.

○**소위원장 김정재** 법에는 그렇게 넣을 수가 없지요.

○**김민철 위원** 업체의 구체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들어가는 법안은. 그거는 나중에……

○**허종식 위원** ‘지연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안 돼요? 되지요. 3년이니까 우선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질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유경준 위원** 잠깐만, 아까 11개가 전체를 다 파악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중에 일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체 다 파악이나 아니냐 하는 거고 법 개정되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적용시키면 되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법 개정되면 다 적용이 되니까 그 문제도 저는 구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14개는 전체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건이라는 얘기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거기는 주신 의견에 의하면 공모가 진행됐는데 우선협상자 발표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경준 위원**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3년 유예한다면 3년 동안 못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해당사항이 아예 없는데……

○**유경준 위원**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돼야 하는

거니까, 지정이 안 됐으면 지금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허종식 위원** 그러면 이 법으로 하면 3년 동안은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경준 위원** 해당사항이 없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유경준 위원**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 같은데……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억울하니까 저를 찾아왔겠지요.

○**유경준 위원** 일단 우선협상자가 돼야 되는데……

○**김민철 위원** 선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거기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논의하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민철 위원** 3년 유예가 6월 22일부터 3년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3)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28)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2)

(10시40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공공주택 특별법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 장철민 의원안입니다.

내용은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의 전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건축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김니다만 죽 넘어가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 대전 동구, 서울 용산 3개 지역에서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수용한 뒤에 현금보상이나 대토보상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반발로 사업지구 지정이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3개 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또 현물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심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상 방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현물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철민 의원안은 쪽방 밀집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조문은 김니다만 그냥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7조의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부분이 있고요. 27조의4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서 장철민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체계·자구의 문제 때문에 장철민 의원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1쪽의 제4항을 보시면 ‘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해서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고 했고요. 12쪽의 40조의10 보시면 앞쪽에 현물보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조문을 정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택법을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17쪽의 검토보고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서의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 역시 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의무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거주 여부 확인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사실확인 업무의 위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 조문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23쪽입니다.

거주 의무자는 거주 의무 기간을 거주하고 장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받은 후에 부기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 조문은 기존에 있는 주택법 관련 조문을 그대로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거주 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해서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및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해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31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다시 정하고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에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즉 넘어가서 34쪽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보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을 마련해야 되는 27조의3 그다음에 49조의5 등은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에서 투기 방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지구 지정·고시된 날부터 역산해서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제2조에 보시면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은 원래 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이 2024년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물보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1항, 2항, 3항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담당 과장님, 현물보상은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거주 의무를 부과하지요? 예를 들면 이 제도로 인해서 당신이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5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실소유자들에게 저렴한 분양가와 그리고 초기에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준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거주 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金熙國 위원** 저는 그런 철학 쪽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 내지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지금 거주 의무를 준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해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팔고 나갔을 경우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거주 의무를 부과한 거지요? 거주 의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의무 부과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면 재산상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케케묵은 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공공주택에 있어서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만큼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지요. 초과이익 환수제 알고 계시지요?

공공주택이 됐든 무슨 주택이 됐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재산상 부담을 주면 되지. 우리가 형법상 신체형과 재산형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신체형을 부과하고 있는 거야.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100의 혜택을 받았다면 50 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어야지,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묶는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재산상 혜택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나는 그러면 어느 일정 지분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토해 놓을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디벨로프를 시켜야지, 전문위원회 주택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언제 발전할 겁니까?

차관님, 모든 주택 분야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무규정은 이제 철폐하십시오. 그것은 집을 빨리 사고 팔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거잖아요. 재산상 혜택을 받으면 재산상 부담을 지우라고.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제가 간단히……

○**소위원장 김정재** 답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은 처음에 10%만 내고 있다가 계속해서 적립해 가면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할 때는 그 집을 분양받아 바로 이렇게 전매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적립하는 동안에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면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노린 수요들이 있을 수 있

고 이 제도의 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거주 의무를 뒀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金熙國 위원** 차관님, 거기 3호에 거주 의무자 실제 확인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주택에 출입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예요. 공무원이 뭐 할 짓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가서 공무원증 내밀고 확인 하나요?

○**유경준 위원** 여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일반 국민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입니까, 청년입니까? 어떻게 제한돼 있습니까? 이것 특별한 취약계층, 청년이나 취약계층한테 우선 배정이나 이런 걸로 관계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기본적으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은 공공분양주택을 얘기합니다.

○**유경준 위원** 공공분양주택 얘기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공공분양은 공공분양 입주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법에서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의무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 상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분양주택으로 알고 있고 공공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는 취약계층, 소득이나 연령, 결혼 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특별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경준 위원**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는데 거주 의무를 주고 하는 것은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 제약을 가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 이것은 좀 다른 종류,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순자산 4억 2000 같은 이러한 공공주택으로서의 여러 입주 자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맥락의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 김희국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민간주택이지요. 지금 지분적립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SH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리고 처음에, 소위 말하면 돈 조금 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형도 내가 한 30%만 내면 나머지 돈은 국가가 대는 거예요. 정부가 다 대는 겁니다, 돈을.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돈을 다 보태 가지고 지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지금 이익이 있으면 나중에 환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참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줘두는 건데 그건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과 제가 하는 말하고 같이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하나……

○**소위원장 김정재** 예,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부동산 투자를 잡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도 김희국 위원에 동감하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의견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쪽방촌에 주거하는 주거기간에 제한을 뒤서 1년 동안 거주 의무기간을 두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주거…… 이게 그런 의미지요?

○**장철민 위원** 거주가 아니에요, 이걸.

○**소위원장 김정재** 이것은 지금 다른 것.

○**김수홍 위원** 이걸 뭘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에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것은 거주 의무가 아니

고요. 현물 보상을 받을, 그러니까 이미 사업 구역이 다 지정이 됐는데 거기의 현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되면 당신은 현물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현금 청산 대상자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같은 맥락에 있어서 쪽방촌도 실소유주하고 거주자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다 다르지요.

○**유경준 위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 두 법의 앞뒤가 맞으려면 실거주의무나 이런 것들은 고려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쪽방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유자하고 거주자하고는 다르거든요, 완전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정재** 거의 다 다르지요.

○**유경준 위원** 그러면 소유만 1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쪽방촌에서 현물 보상을 받으려면 진짜로 실거주한 어려운 사람들이 받게끔 돼야 하지 소유주한테 가는 것은 아까 앞의 법 취지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쪽방촌을 재개발했을 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경우는 거기 현지에 거주하는 쪽방촌의 취약계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민간주택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로 주는데 그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현재 입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소형으로 지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실거주를 몇 년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재산상의 문제만인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예를 들면 지분적립형이라든지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정말 재산상의 이익 때문에만 이런 건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재산상의 이익도 있고요.

그리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최소한 20년, 30년 정도 걸쳐서 지분을 점점 취득해 가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형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간 이상을 살았을 때 그거를 나중에 환매했을 때의 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를 하고 살고 나서의 그 문제를 그러면 손익을 나눌 거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걸 좀 염두에 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예.

○유경준 위원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공공분양주택 대상자고요. 순자산 기준으로 따질 때 작년 기준으로 한 4.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지분적립형 구조의 대상입니다.

○유경준 위원 재산 제약이 가장 기본적인……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예, 자산도 있고 소득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소득도 있지요.

○허종식 위원 무주택?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예,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金熙國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쪽방촌에 대해서는, 지금 3항에서 5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423)

(11시00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이 사항은 간단한 거여서 1쪽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소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견이 있었습니다. 내부 조직을 키우는 방편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또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업무의 성격상 LH에서 시행하다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오히려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또 지방국토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토지매수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LH 혁신방안의 이행과 지역의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개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김민철 위원 아니, 한 가지……

○소위원장 김정재 예,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여기에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에다가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도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 관련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인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 위원 이것은 어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어느 거냐 다 조금씩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급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미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이게 맞나요, 소속 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앞에 나오는 게? 다른 법체계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순서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보시면 ‘이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이런 순서로, 주로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이런 형태로 위임이 되고 있는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입법례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또 주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이 권한을……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료 우선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그래도 시·도지사가……

○소위원장 김정재 뭐야? 앞으로 시·도지사 할 거야, 뭐야?

○김병욱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그리고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법체계가 맞지 않나요? 이게 시·도지사 앞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글썄, 저는 이게 전체적인 행정체계라든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법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순서가 있나요? 견제순으로 한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사실 반반입니다.

○김병욱 위원 반반이지요?

그런데 사실 소속 기관에 따라서는 100여 명밖에 없는 기관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시·도지사보다 우선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부터 조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熙國 위원 전문위원님, 바꿔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제일 마지막으로…… 하여튼 그 순서는 지금 위원님 취지를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 의견은 좋으신데요, 혹시 다른 법들하고 다 동일하게 하는지도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

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6)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1)

(11시06분)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은 보고사항은 ‘요약’을 설명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자료가 두 개가 나 있습니다. 하나는 요약본이고요 하나는 원판입니다. 원판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요약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요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은, 지난번에 23개의 안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중에 3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와 상의해서 자료를 좀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을 꼭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투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리츠의 예외적 등록요건 중 연기금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쪽을 보시면 일단 연기금의 과도한 투자로 국민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검토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츠의 영업인가 및 등록 절차 흐름도를 보시면 리츠는 인가 방식과 등록 방식, 두 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는 현재 법 9조고 등록은 법 9조의2입니다.

차이는, 3쪽에 보시면 당연히 인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등록은 등록 요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는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서는 사업계획에 관해서 투자계획이나 배당계획 현실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츠 설립 시 원칙적으로는 인가입니다. 다만 연기금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내면 그냥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인가리츠와 등록리츠의 설립 절차상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검토가 생략되는 점인데 이것은 당연히 연기금의 투자 전문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해서 주주총회를 통한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와서 투자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맞냐 안 맞냐라고 따지는 것이 이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에 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가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리

츠는 일률적으로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간소화하는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사업에 제약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30%를 초과한 리츠, 이것을 우리가 개발리츠라고 하는데요, 전체 350개 중 128개고요. 그리고 이 128개 리츠 모두 부동산개발사업에 10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록리츠는 30% 이하로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리츠는 전부 다 인가리츠입니다. 인가리츠 128개가 부동산개발사업에 각각 100%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가리츠와 마찬가지로 연기금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등록리츠에 대해서도 투자비율을 삭제해서 전문성·안정성을 갖춘 연기금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고 연기금 중심의 등록리츠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수정의견은 현행 연기금 지분율 30%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30% 초과 투자 금지라는 두 가지 현행 요건은 등록요건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되 지분율이 50% 이상인 등록리츠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을 삭제하자 이것이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9쪽을 보시면 별지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별지 자료 이게 수정의견인데요.

○소위원장 김정재 9페이지에 보면 그 사이에 별지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페이지 사이에 있는 별지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국토교통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아직, 국토교통부 수정의견을 저희 수정의견에 반영해서 올리는 게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률 체계상 저희들은 9조의3을 신설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제4호에 있는 내용에다가, 보시면 ‘다만,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는 동일한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 평가손실을 제외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이익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자산 평가손실을 미반영하는 경우에 과도한 배당으로 또 미래의 주주에게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금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기구로 일종의 명목회사입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도관체라고 하는데요. 리츠의 수익 및 배당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리츠 등의 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액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소득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소득공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세법과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주식 및 채권 등의 평가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상법이 적용됨에 의해서 주식 등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서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상법은 미실현이익은 배당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미실현손실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취득가 및 감가상각에 의해서만 계상을 합니다. 실은 평가손이나 평가손실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결산기 말에 기초 대비 보유 주식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적용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데 상법에 따른 배당액이 법인세법상의 면세 기준, 그러니까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는데 평가손실이 발생해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비용 증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현재 주주의 이익 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그래서 리츠는 보유 주식 평가액이 달라진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15쪽 보시면, 저희들이 다 찾아봤는데요. 평가손이 발생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산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손은 오로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평가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투자회사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지금 한 개로 딱 보입니다. 그게 뭐냐?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명칭은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리츠인데요.

보시면 전기에 5.15억의 이익잉여금이 났는데 주식의 평가손실이 98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투법에 따라 배당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이 5.15억이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는 1.25억을 부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당기에는 31억의 이익잉여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이 153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로 8.7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배당이익한도 산정 시에 손실이 반영되는 부투법 기준으로는 이익잉여금보다 평가손실이 커서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기준은 한도에 보니까 이익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미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츠는 뭐냐? 이것은 주택도시기금이 3000억 원을 출자해서 성립한 앵커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리츠에 투자하고 그 배당을 수익으로 하는데 상장리츠의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앵커리츠는 그러니까 이미 상장돼 있는 리츠의 주식을 사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 주택도시기금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도 발생을 했고요. 리츠에게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부과받게 돼서 리츠의 자산 감소가 발생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문제가 없냐? 다른 데는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보유해서 거기에 나는 임대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의 법인세법에서도 자산재평가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손익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이 조문은 사실 앵커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위

해서 만들어지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식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켜서 주가 하락 시기의 불합리한 배당액 감소 및 법인세 혜택 제외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그냥 저희들이 약간의 체계·자구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은 이익배당한도라고 해서 ‘자산의 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19쪽입니다. 중간배당 도입입니다.

리츠가 일정 요건하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 횟수, 주기, 금액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중간배당이 남용되는 경우 리츠의 수익 왜곡 및 운영 지장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리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목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해서 더 성장하려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당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리츠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절차의 단축, 결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서 월배당, 분기배당 등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득형 투자자의 리츠시장 유입이나 또 공모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배당을 늘리려면 1년에 2회 이상 결산을 실시해야 되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겁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당기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4회 이상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SK랑 코람코더원리츠인데 여기 당연히 이제 결산도 해야 되고 주총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즉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23쪽의 수정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배당을 모든 리츠가 하기보다는 좀 안정돼 있는 상장리츠로 한정해서 중간배당을 허용하도

록 하고요. 중간배당의 요건에 추정대차대조표 이런 표현들은 다 삭제를 하고요. 감사 전원의 동의 그다음에 정관의 규정에 따라—결국 개정안과 같습니다—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배당의 한도는 총합계액이 해당 회계연도 이익배당한도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정대차대조표의 그 요건을 삭제한 것 대신 해당 회계연도 이익배당한도 이내에 배당하라고 저희들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간배당은 이사의 책임 한도를 상법에 따라 배당액을 한도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준용규정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없는 상법상의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어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상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과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는 전문지식도 없고 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도 없으니까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만들고 거기의 주식을 사 가지고 나도 부동산 과실을 좀 먹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껏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과실을 얻게 되면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든 두 번 배당을 하든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빈곤하니까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윤배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투자자한테 논갈라 주시오, 이렇게 앞에는 해 놓고 그 뒷장에 가면 사사건건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투자비율을 얼마로 해라 배당을 얼마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규제법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장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이런 입법취지도 모르고 그냥 사사건건 다 규제를 한다면 이런 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달려라 하고 두 발을 다 끈으로 묶어 놓은 것하고 뭐가 다를니까, 지금?

그리고 리스크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은 금융의 기본입니다. 리스크를 부담할 것을 갖다가 회사한테 다 묶어 버리면 이 사람이 활동을 못 하지요.

담당 과장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투자자들에게 그 과실을 돌려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백승호 예, 맞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 리츠가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특히 상장리츠는 사실 금융적 측면이 많이 있는 거지요. 금융은 본격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금융을 규제하지 않으면 금융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나 투자자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투자하는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특히 상장리츠는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사고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이렇게 배당도 매월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기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고 상승기 같으면 이게 논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손실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츠회사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손실이 생

기는 이 즈음에 투자손실을 평가 관행에 의해서 빼 달라?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회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의회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질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물론 이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지만 리츠라 하더라도 임대수익률이 공실률이 나올 수가 있고 임대료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로 배당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월별로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배당을 받아 가느냐가,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공시제도가 제대로 완벽하게 돼야 되고 리츠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리츠산업이 성숙돼 있느냐 이런 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100% 동의하고 이것 더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하고 하향 가능성이 많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기존의 주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熙國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정재 예,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투자회사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은도 있고 또 외환도 있습니다. 이 리츠를 만들 때 리츠의 지도·감독 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자자 본인입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투자자 보호를 해 가지고…… 투자자 보호라는 그 이익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의 측면이 있다면 저는 후자에 훨씬 더 웨이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라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 평가손실은……

전문위원, 아까 이걸 빠졌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金熙國 위원 평가손실 문제를 제안한 것하고

지금 수정한 것은…… 수정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金熙國 위원 그렇지요. 그건 이미 해결된 겁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올라온 거라니까요.

○金熙國 위원 아니라니까. 아까 설명할 때……

○김병욱 위원 아니에요.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평가손실을 뺀다는 거지요.

○金熙國 위원 반대로 설명 안 했습니까?

○김병욱 위원 아니에요. 원안 그대로 올라왔어요.

○金熙國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현재 이 안은 배당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배당을 할 때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식을 보유한 평가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익 배당금이 있으면 그냥 그 모두를 다 배당하라 이런 뜻이고요.

지금 김희국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1년에 열두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해도 되고 세 번을 해도 되고 다만 중간배당을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실현 손실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실현 손실이 100억이 나든 200억이 나든 배당 가능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흥 위원 그러면 김정재 의원안에서 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니, 김정재 의원님 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장만 좀 바꿨다는……

○김수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러면 반영하자는 거야. 미실현 이익을 반영해서 배당하자는 얘기 아니야?

○김병욱 위원 아니요, 반영하지 말고 배당하자는 거지요. ‘말고 배당하자’가 올라온 안이라니까요. 똑같다니까, 수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金熙國 위원 4·5·6 항목별로 심사를 좀 해주세요.

○소위원장 김정재 예.

○심상정 위원 그 전에 질문 좀……

○소위원장 김정재 예.

○심상정 위원 배당 문제 이전에 제가 좀 해결

이 안 되는 문제는 등록 문제하고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투자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당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할 거냐인데 그 이전에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결국은 등록요건 문제하고 투자비율 문제인데 첫 번째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 건데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여러 검증 능력이 돼 있으니까 풀어 줘도 된다 이런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몇몇 전문가들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발리츠와 운용리츠가 있는데 미국의 개발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개발능력에 대한 검증 후에 허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다. 그러면 그 검증 능력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 그런데 자산에 대한 검증 능력이라든지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랜 과정에서 검증된 토대 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 게 다 부동산 PF잖아요.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투자하면 이걸 100% 다 열어 준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그건 해결이 되고 이후의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금융 차원의 리스크한 문제만 지적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김병욱 위원 리츠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개발리츠가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50% 이상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개발사업을 다, 전체 리츠금융의 100%를 개발사업에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해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 아닌가. 어느 정도 제한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은 50%지요? 그걸 한 70%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가장 하이 리스크한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은 중간에 좀 더 까다로운 필터링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인 의견이 개발 리츠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견해가 많고 또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국내의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경험 안쪽에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부동산펀드가 있고 리츠가 있잖아요. 펀드는 돈만 맡기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취득이나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여를 하잖아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건데 그걸 누가 ‘70%로 제한해라. 50%로 제한해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냐 하는 거예요.

○김병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자 말라 하듯이……

○유경준 위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김병욱 위원 물론 자기들이 하지요. 하지만 금융은 규제산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금융이 규제산업이라는 거예요.

○유경준 위원 이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자산포트폴리오를 당국에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규제하냐……

○유경준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전문가들이……

○김병욱 위원 그만큼 공공성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논쟁할 필요는 없고, 국민연금이 가장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모여 가지고 투자수익률……

○김병욱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걸 인정하면……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하나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요.

4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부동산 개발을 하는 리츠, 인가리츠입니다만, 128개 중에 128개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에만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는 결국…… 그러면 여기 말고 뭐가 있냐?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토지를 사는 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발리츠 하나를 만들 때 부동산 개발사업은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회계 과정이나 운용 과정의 집중도나 효율성을 따져서 그냥 하나의 개발사업에 하나를 올린다는 이런 형태가 사실상은 개발리츠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개발을 70% 하고 임대사업을 30% 하고 이렇게 구성하기보다는 개발리츠 10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로 하기보다는 10개로 만들어서 다 100%짜리 하고 그다음에 운용리츠, 임대리츠 같은 걸 또 한 20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목과 성격에 따라 부동산 개발투자회사는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개발리츠를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발사업에 하나의 부동산 개발회사만 투자하는 것이 현재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투자하는 주체가 다 알아서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저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개발리츠, 그러니까 공모리츠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리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때 그 하이 리스크만큼의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검증능력 이런 것들을 법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개발리츠로 공모리츠가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확 풀어

주자는 건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00%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 개발리츠 부분이 30% 이하면 그냥 쉽게 등록을 해주자 이런 취지고요.

연기금의 경우에도 만약에 현재도 개발리츠 다 100% 하겠다 그러면 인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등록을 조금 더 쉽게 해 주자. 그래서 연기금이 30%가 아니고 50% 이상 투자하게 되면 연기금이 그 리츠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연기금 내부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발리츠로 전체 100%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것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는데 사실 연기금을 맘만 먹으면 팔 비틀었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유경준 위원 이것은 팔 비트는 것하고 전혀……

○심상정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증할 때……

○김병욱 위원 다리를 비트는……

○유경준 위원 팔 비트는 힘을 빼는 겁니다. 개발리츠에 많이 투자해서……

○심상정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소위원장 김정재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배당액 목표로 해서 잘해서 주주들한테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간배당 과정을 보면 여기 처음에 이사회 의결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제가 주주총회로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주총회로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도 주주총회

의 의결을 거치면 중간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주주총회 소집하는 데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 조금 더 간소화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김민철 위원 제가 주주총회로 하자는 이유가 있는데 20페이지 7항에 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 놓고 그 뒤의 8항 마지막 부분에 쪽 보면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주주총회를 하자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이사가 안에서 운영사에서 보고 안 해 주면 몰랐다고 그러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을 없애든지, 이사회 의결로 할 때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든지……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라든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람들의 책임하에서 중간배당을 결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뒷 조항 ‘다만’은 다 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놔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주주총회 의결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유경준 위원 위원장님, 이거 몇 개가 큰 덩어리인데 좀 쪼개서 하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더 답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삭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것은 상법의 전형적인 표현이고 상법에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절차적으로

동일하게 중간배당을 할 경우 이사회와 책임과 책임면제 조항을 명백히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 의결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상법의 중간배당 규정을 다 참조해서 원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주택실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법에서 상법 일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자의총 관련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의총 대신에 이사회로 돌리는 절차가 단순한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전자의총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신속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전자의총은 의결권은 있지만 질의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대체제가 될 수 없다. 현재 법무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민철 위원** 모든 걸 전자 주주총회로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같이 병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내오신 것 보니까…… 모든 결정을 전자로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못 오는 사람은 의결권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에 전자투표라든지 전자의결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고 그결 신뢰성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사회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사회 한 10여 명 내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배당, 이익이 안 나와서 어려워도 그냥 배당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 전체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이사회한테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다만’의 조항에다

가 넣어 놓고 면제 조항을 다 확실하게 넣어 놔 줘야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주주들한테…… 많이 벌어서 나눠 주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허종식 위원** 필요한 사람이 손해도 감수해야지.

○**김민철 위원** 이런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아니면 중간배당 결정을 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할 때는 주주들한테 물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확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제가 하나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의총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 입장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위원님처럼 받은 현장에 없고 받은 온라인상에서 접속하면 그분들의 의결권은 주여지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전자의총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총을 거치면서 지나가는 배당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저는 그것을 할 때 이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중간배당하는 게 좀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홍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연관된 얘기인데, 이익 배당할 때 김정재 의원안은 그때 배당할 때 미실현된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은 빼고 이익 배당하자 이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반영을 하면 배당 가능액이 줄어들지요. 배당할 게 없습니다.

○**김수홍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개정안은 그 내용이지나 이거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래서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두 가지 사안인데……

○**김수홍 위원** 미실현된 손실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실현 손실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에,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미실현 손실이 100억이 발생했다면 그냥 100억을 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실현 손실은 아예 디스커션에서 빼겠다는 얘기

입니다.

○**김수홍 위원** 아예 빼자. 산정하지 말자 이거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산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사실 리츠법은 지난번 법안소위에 이어서 오늘 계속 논의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핵심이 저희가 논의한 전체 23개 항목 중에 지난번에 논의가 됐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했던 게 4번, 12번, 13번 이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없어서 이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꼭 다시 한번, 물론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따로 법안 발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논쟁은 충분히 했고 이것을 통과시킬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하자는 위원님들로 나눠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머지 1번에서 23번, 지난번에 문제없었던 것은 저희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4, 12, 13 빼고요.

○**김병욱 위원**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없나요?

○**소위원장 김정재**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중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만 따로 뽑아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원판 보시면, 요약본 말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요약은 지금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요약은 4번, 12번, 13번, 세 부분이고요. 전체는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3번까지는 리뷰했고. 그중에 문제가 된 4, 12, 13 이것만 정리를 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욱 위원** 이 조항과 연관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통과시킬 안을 설명해 줘야지. 벌써 몇 주 지났는데 그냥 통과된다는 건 우리 소위의 역할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오늘 논의한 전체는 1~23번까지인데 지난번에 다 리뷰를 하고 설명을 했고, 오늘 그중

에 문제됐던 4번, 12번, 13번을 자세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4, 12, 13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들 의견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김병욱 위원** 계속 심사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시겠습니까?

○**유경준 위원** 4, 12, 13도 많이 섞여 가지고 4번 했다가 12번 했다가 13번 했다가 하는데 하나하나씩 해 보지요.

○**김병욱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김희국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려를 하시니까 4번,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4번, 12번, 13번 오늘 한 것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 듣고 이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의가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유경준 위원** 찬성은 하는데 4번, 12번, 13번도 하나하나씩 얘기해서 의견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같은지, 다 반대하는지 그걸 확인하지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께서 4, 12, 13을 다 반대하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나하나 물어도…… 속기록이 또 있으니까 제가 4, 12, 13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부동산회사의 등록요건 강화 및 개발사업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 심상정 위원님도 반대십니까?

○**심상정 위원** 예.

○**김병욱 위원** 개발사업에 100% 투자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위원** 예.

○**소위원장 김정재** 왜냐하면 반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은 다시 설명하고 또 대안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유경준 위원** 아까 100%는 안 되고 70%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까지는 가능해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지. 저는 100%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병욱 위원** 제가 이건을 제시했지만 사실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리즈가 배당을 위주로 설립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인세법상 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러면 리즈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부분만 해결되면 또 타협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논의를 숙성하고 각자 고민해서 마지막으로 소위 있지 않습니까? 3월 29일인가요? 그때 한번 논의해서 전체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타협안도 만들고 절충안도 만들고……

○**소위원장 김정재** 제 생각에는 23개 중에 3개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고 이 부분만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또 계속……

○**유경준 위원** 다음에 또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서너 번째 또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방금 말한 것처럼, 4번 안처럼 100%는 곤란하지만 70% 정도는 안 되겠냐 하는 그런……

○**김병욱 위원** 함께 논의하자는 거지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유경준 위원** 4번, 13번 왔다 갔다 논의해 봐야 발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정재** 제가 절차를 물어보니까 이렇게입니다.

이 4·12·13 항목을 만약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면 이 부분은 따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지요. 다음에 해서 이걸 다 통과시킬 것 같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이라도 제외하고 다 통과를 시키고 다시 발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떤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완할 게 이런 거지요? 4, 12, 13이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완이

되면, 지금 많이 보완해 온 겁니다, 보완이 되면 다음에 다 같이 통과시키면 되는데, 난 이거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시 새로 발의해 갖고 하고 나머지는 오늘 다 통과시키는 게 낫지요. 어떠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보완해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오섭 위원** 어차피 국토 법안소위가 22일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위 전체회의가 24일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통과를 시켜 봤자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게 24일날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조오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22일 날 다시 한번 쪽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음 주에 논의할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견이 뭐가 있고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 대로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게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서 다음 주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타협안을 만들고 서로가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9일 정도 한번 논의해 보고 4월 달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사람들 이의가 없으면 김병욱 위원님이……

○**유경준 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김병욱 위원** 다음 주는 도저히 불가능해.

○**金熙國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예를 들어서 제가 13번 중간배당의 도입을 제안을 했고 발의를 했고 이 조항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이야기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지금 한 30분 내내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앉아 가지고,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유경준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김병욱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4번, 12번, 13번인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

12번, 13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그리고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의견을.

○**유경준 위원** 4번은 김병욱 위원님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50%가 넘는 경우에 100%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상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발리츠나 임대리츠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100%를 다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반 이상이.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유경준 위원** 그래서 그 70%, 80% 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가 모여서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데가 하나도 없다. 거기는 그냥 두어도, 7% 상한이나 캡을 안 씌워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70%든지 100%든지 과연 그런 차이가 있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투자비용 특례에 연기금 지분율이 50% 이상인 등록리츠에 대해서는 부동산 리츠에 투자비용 제한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한다 이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100% 다 투자를 부동산에 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츠를 보면 거의 다, A 리츠는 아주 큰 대형건물 하나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100%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래서 투자비용 제한을 삭제하자는데……

○**김병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개념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인가리츠는 지금도 100%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등록리츠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김병욱 위원** 다시 말해서 인가리츠는 투자하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보고해서 인가를 내줄 때 필터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등록리츠는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리츠까지도 개발에 100%까지 한다는 것은 필터링 과정이 없는데 100%까지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래서 어떻게……

○**金熙國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앞을 생각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50% 투자한 등록리츠가 그렇게 한다는 건데 왜 앞의 이야기는 빼 버리고 꼬트머리 이야기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유경준 위원** 둘의 차이가 사업계획의 심의와 검토잖아요. 사업계획의 심의와 검토는 국민연금에서 이미 잘 한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5% 되면, 그 말씀 하는……

○**김민철 위원** 차관님, 제한을 줬을 때의 그 취지가 됩니까? 제한을 왜 처음에 줬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처음에는 아마 개발리츠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민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걸 100%로 하면 그 위험성이 100% 다 없어집니까? 자신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는 지금 현재도 많은 인가를 받아서 연기금이 개발리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우려됐던 그런 제한을 줬었는데 그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100%가 가도 거기에 대해서 100% 전혀 그런 피해가 없다고 확신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어차피 등록인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원 같은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해서 연기금이 그 사업에 대한 50%가 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리스크를 충분히 다 헤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과장님, 지금 4번이 좀 핵심적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오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똑같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원점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자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 일단 과장님 말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백승호** 개발리츠에서 위험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 무너지는

위험성이 아니라 개발기간 동안에 사업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는 거지 사업 자체가 부도난다 그런 위험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경영평가 그다음에 신용평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리츠사들이 이런 평가라든가 공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펀드로 가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꼼꼼히 보거든요. 등록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심상정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법안심의가 필요 없다고 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전망이지 저희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의 자문을 다 구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발리츠를, 공모리츠가 이렇게 들어가는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갖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정도는 열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어느 누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 그것이 다 확인이 됐고 그러나 또 운영리츠하고 달리 개발리츠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리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미국의 AMC 사례도 제가 열심히 들어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지금 같은 부동산 정세 속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제가 들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제기하는 건데 ‘위험 없는 게 어디 있냐’, 또 ‘국민연금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도 수익을 다 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무리한 주장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야지……

○유경준 위원 심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위험성이 훨씬 큰 것은 부동산펀드거든요, 펀드. 리츠가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펀드는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아예.

○심상정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여기 제한조건을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100% 열어 주면 되지 뭐하러 제한합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조정을 해야지.

○김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등록리츠 할 때 연기금이 30%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50%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금이 20% 더 들어서 50%를 투자했다 해서 100%로 늘리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이 위험이 높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게 국가가 할 역할이고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걸 다 풀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배당과 그다음에 이익배당 가능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결론의를 해 봐야 지금 당장 조문별로 답이 안 온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가……

사실 그리고 이 법만 지금 두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좀 늦춰 갖고 한 29일 정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견이 많은데 이것을……

○유경준 위원 잠깐, 위원회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곤란하면 칠팔십 %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니까, 제 말씀은. 하나하나……

○유경준 위원 아니, 지금 하나하나 봐야지.

○김병욱 위원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거니까 전체를 보자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 이것은 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모두에 설명하셨다시피 이 리츠가 이제 저희는 막 태동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한 3년 전에도 8%로 상당히 높고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고 소위 말하면 그냥 서민들이 나는 부동산 투자를 못 하겠고 그런 개발회사에 내 돈 조금 넣어서 나도 그 건물의 소유주가 한번 돼 본다 이런 개념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자라는 게 전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이 거의 전면 개정 비슷하게 내

용이 많은데 지난번 회의 때 굉장히 오래 얘기했습니다. 2시간 이상 얘기를 해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논의하자 해서 오늘 4번, 12번, 13번만, 그때 문제됐던 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4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또 한두 번은 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법안소위가 아시다시피 표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면 계속 혼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위험을 이 선이면 되겠다고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12번, 13번만 오늘 다시 논의하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4, 12, 13은 다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계속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세 건은 계속 심사를 해서 다음 주 22일 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22일은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법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소위 운영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법이 쌓여 있는데.

○**소위원장 김정재**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고 다른 법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29일 날 해야 됩니다, 29일.

○**서범수 위원** 아니, 22일이나 29일이나 뭐가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김병욱 위원** 아니, 이 법만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범수 위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이나 29일이 7일간의 차이인데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22일 날 그냥 대안을 갖고 와서 토론하면 되지.

○**김병욱 위원** 제가 리츠 협회랑 간담회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서범수 위원** 내일이라도 하면 되지, 간담회.

○**김병욱 위원** 아니, 시간이 안 돼서.

○**소위원장 김정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 오섭 위원님 이야기처럼 23일 날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이제 논의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께서 4번, 12번, 13항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갖고 오셔서 다음에 그것만 논의하면 제 생각에는 한 삼사십 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04)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용산공원 조성법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호국보훈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종합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보훈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국가보훈처)는 2022년 8월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훈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에서

종합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보존 관련 시설은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로 정의되어 있고 보존시설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개정안의 보존시설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역사·문화·복합시설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수용할 경우 보존시설의 범위를 종합기본계획 변경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 국가보훈처는 현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에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는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존시설 추가를 위한 앞쪽 내용의 입법 취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해서 보존시설의 설치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보훈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적극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국가보훈처장은 아니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뀌었죠?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게 6월 5일부터여서요 입법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용산공원을 추진하는 종합계획의 설립 주체가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서울시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아니요, 국토부장관입니다.

○金熙國 위원 그런데 관련 부처 의견을 보면 서울시의 의견은 종합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보존시설을 특정하면 다른 시설을 요구할 때 어떻게 안 넣어 주느냐 이런 입장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관계 부처에다 ‘종합기본계획에 어떠한 시설을 넣어 줄지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래서 의견 받아서 넣으면 되지. 그러면 앞으로 국가보훈처장관 이외에 다른 부처들이 ‘우리는 문화시설 넣고 싶다. 우리는 체육시설 넣고 싶다. 우리는 상업시설 넣고 싶다’ 할 때 계속 받아 가지고 그 장관들이 용산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로 지정해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일단 저희가 현재는 역사나 문화라든지 생태 이런 쪽으로 용산공원 수립 방향이 돼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면 문화체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기능의 추가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국가보훈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金熙國 위원 차관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법상으로 보존시설이라는 법적 정의도 없는 것을 여기 들고 와 가지고, 지금 법상으로는 현충시설하고 공훈선양시설밖에 없다면서……

전성배 과장님!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예, 공원정책과장 전성배입니다.

○金熙國 위원 내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보존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요구했을 때 그 시설을 다 받아 주고 그 해당 장관도 용산공원위원으로 계속 선임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시설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모든 부처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보존시설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것에 저희가 동의하는 이유는 용산공원이 다른 도시공원이나 다른 공원과 달리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존 기능을 국가공원에 추가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을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 법 제안하기 전에는 보훈시설은 안 들어 있었습니까, 용산공원 내용?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기본계획상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동안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용산공원에 보훈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희국 위원님 말씀과 약간 비슷한데요. 보훈이라는 단어는 국가 존립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주권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보훈이잖아요. 그것과 역사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보훈이에요, 역사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임진왜란은 역사가 있고요.

○**조오섭 위원** 보훈 개념이 안 들어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보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보훈에 관한 개념들이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희생자라든지 공헌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오섭 위원** 현충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충 시설도 있고요.

○**조오섭 위원** 보훈이라는 개념은 좀 광범위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보훈처에서도……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이 답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조오섭 위원** 예.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보훈의 영역이 너무 넓지 않나라고 하시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역사, 문화 배경인데 거기에다 이제 보훈이 추가되는 항목이 되겠습니까마는 또 어떻게 보면 보훈

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또 보훈이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폭이 넓겠습니까마는 현재 국가보훈의 대상은 1895년 을미의병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있는 독립과 호국과 민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보훈의 의미를 담은 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熙國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산공원에 담고자 하는 시설은 어떤 어떤 시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현충탑이라든지 아니면 보훈에 관련된 문화재를 이전한다든지, 무슨 내용이에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지금 이 부분은 위원회의 종합계획에 맞춰서 함께 논의될 공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시설이나 기념 형태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체험하는 국가공원을 상징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의미를 담은 것을 종합계획으로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熙國 위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점점 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

○**조오섭 위원** 잠깐만요.

그랬고, 또 하나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보훈을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국에 국가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없나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전국에 국가공원은 용산공원이 유일합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예.

○**조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만 있고 나중에는 추가로 지정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추가적으로 법률이 제정돼서 국가공원을 하겠다면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현재는 법상 특별히 국가공원으로 지정돼서 조성 계획 중인 것은 용산공원이 유일합니다.

○**조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전쟁기념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공원에 이런

보훈과 관련된 시설들을 해 놓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타 시설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선 가장 중요한 보훈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홍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현충원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나 하면 메모리얼 파크가 있으면 그게 메모리얼 파크라는 기능을 해야 되고, 국가공원이 생긴다고 거기에 보훈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충원의 의미가, 만약에 현충원이 메모리얼 파크면 거기에 보훈 시설을 이렇게 해서 선양하고 기리는 게 역사성을 저기하는 건데 현충원이 있는데 또 용산공원에 보훈 시설이 있게 되면 조금 뭔가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김민철 위원** 저도……

○**김학용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민철 위원** 아니,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보훈 시설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애매하게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법률에 담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에 보면…… 지금 보훈단체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전체 17개입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17개의 시설을 여기에다 넣어 달라고 하면 다 각기 넣을 건가요? 그럴 계획인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넣어야지.

그러면 안보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보단체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뭘 만들게 한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크게 설립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구체적으로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이라고 명칭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냥 보훈 시설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거기에 연결 지어져서 다 되는 거고 원래 공원의 취지에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쪽 단체마다 ‘뭐 해 줘, 뭐 해 줘’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그걸 다 해 줄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보훈처 입장에서?

답을 해 주셔야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에는 ‘national cemetery’로 돼 있어서 달리 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측면의 의미는, 방향은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에 안장된 묘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민들이 찾고 자유롭게 다니시면서도 어떤 나라 사랑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과 시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 어떤 보훈 단체, 특정 단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보훈 기념일은 정해져 있지요? 우리 한일합방 전에 일어난 의병하고 독립운동가, 6·25 참전, 베트남 참전, 4·19 혁명,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훈과 보훈처에서 관장하는 국가보훈의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많은 보훈사업 중에서 과연 용산공원에 어떤 보훈사업 위주로 조성을 하고 기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특정 보훈사업을 중복 또는 과다 배치함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면 최소한 용산공원에는 어떤 보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라는 정도는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법안을 바꾸는 게 맞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보훈 집어넣고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산공원에서의 보훈사업이 어떤 보훈사업인지, 제가 아까 구한말

의병운동부터 쪽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좀 그림을 갖고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국회에 와야 되지 않나요?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구체화되고,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김민철 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논란만 되는 거지.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이 보훈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훈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에 어떤 특정 시대의 조형물을 넣는다 이런 건 지금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야 법에 넣는다, 이건 거꾸로 된 거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어떤 시설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화나 역사나 이런 단어를 확장 해석해서 보훈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원이니 이런 부분에 보훈이라는 걸 좀 넣어서 그와 관련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메모리얼 파크 같은 데도 있고 외국에 가면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좀 선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계획수립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현재 지금 저희는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공간 구축 방향을 잡고 있고 체험과 전시를 위한 기념관과 그리고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광장과 상징 시설물 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실제적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추진 위원회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확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보훈처 자체의 어떤 의견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아직 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보훈 관련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역사나 문화나 그리고 복합 시설, 보훈 시설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역사든지 문화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봐요. 이것 보훈 시설 하자 하면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행정시설을 넣든지 보훈시설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역사, 문화 이것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정 아닌가요, 국장님?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에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기본계획에 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기본계획에 역사시설은 어떤 성격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시설은 어떤 성격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보훈시설이라는 표현이 법상 들어온다면 그걸 기초로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보훈부와 용산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절차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면 보훈이라는 법 규정 안 들어가면 전혀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金熙國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정재** 근거가 있으면 더 낫다는 소리지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현 상태에서 만약에 다양한 관계 부처와 용추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보훈이라는 성격상 좀 더 명시적으로 법에 표현이 된다면 더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위원님들, 우리가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법안은 논외로 치더라도 수많은 케이스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들고 와요. 그러면 박물관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디스플레이할 전시품은 뭐고 큐레이터는 몇 명이 있고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스킴을 가지고 와서 법을 만들어야지 ‘박물관 짓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박물관 그만큼 반대해도 통과시켜 놓고 보면 박물관만 있어요,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고 큐레이터도 없고.

그렇다면 용산공원도 보훈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프레임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뒤의 4쪽에 보니까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작년 10월에 보냈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4차 변경 수립은 올 4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보훈처에서 용산공원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은 있다는 건데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용산공원이 사실은 국가적인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공원을 한마디로 말할 때 이게 호국보훈공원으로 갈 건지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역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원의 기본 성격을 국내외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상징화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것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안을 연구용역하고 있고

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치는 현재 전쟁기념관과 연계해서 거기서 기존에 호국이 있으니 독립과 민주 등을 아우르는 어떤 상징,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상징 기념관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형물과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콘셉트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며 살아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희생을 추모하고 헌신에 감사하며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보훈 기록들을 전시·운영하는,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휴게·교육·문화 공간 속에서 국가적 추모 행사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플랜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을 짜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용산공원 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지금 보훈시설을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은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심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기념관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 안의 산책로에 조형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예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그와 함께 관련해서 계속 전시물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면서 휴식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병욱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이 보훈 시설에 있어서 호국과 민주를 기념한다 그랬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활용해서 독립·호국·민주를 균형되게……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이 있고 민주보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다 녹여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호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호국과 민주를 잘 섞어서 공원

을 조성하겠다 또는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보고가 된 거고 확정된 건가요? 호국과 민주를 함께 해서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확정된 입장인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저희가 지금 관련 독립·호국·민주를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기념관을 조성하고 어떻게 담을지는 세세한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좀 더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합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표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종합기본계획이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또 보훈 개념이 들어가서 되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지요. 아직 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안에 보훈 영역이 단어가 명기되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한, 여러 가지 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의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유경준 위원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내용 중에서 역사·문화·복합시설로 돼 있는데 역사·문화는 뭐 추상적이지만 알겠는데 복합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상의 복합시설의 예로는 생태시설, 온실이라든지 수목·초화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다음에 교육관, 실습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이라 함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역사·문화시설 외에 다양한 시설들을 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복합시설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야?

○조오섭 위원 지금 애매모호해요.

○김민철 위원 기념품도 하고 이런 것 다 하겠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단어 몇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상징성 있는 단어들을 내는 거지요.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복합시설이 있으니까 ‘보훈’을 넣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김민철 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용어를 ‘보훈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 부분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걸 아우르는 것이 보훈시설이고 보훈시설 안에는 여러 가지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보훈 기본법을 감안해서 앞에도 역사·문화·복합시설 이렇게 됐듯이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규정을 하는 것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별것 아닌 것 같으면 넣어 줍시다.

○서범수 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조오섭 위원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다 듣잖아요. 각 부처 의견을 다 듣지요.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다 있는 거기에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모든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을 조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다른 요구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 단체에서 우리 시설 해 달라, 우리 시설 해 달라 그럴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역사와 문화와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보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서, 넣어 버리면 이게 각 단체나 여러 곳에서 그 요구 조건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거냐는 애기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런데 저는 이 보훈이라는 것하고 보훈단체를 별개로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895년 이후에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나 광복을 위해서나 했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보훈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보훈단체, 우리 지역 가면 다 만나 뵙는 그런 분들이 해 달라, 그런 것과는 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해외에 가 보면 독립을 기념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대한민국이 언제 독립을 했고 어떻게 죽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훈시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역사시설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보훈단체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보훈’ 단어를 넣어 놓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단체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은 저는 특별히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심상정 위원 그것도 있는데 사실 강 건너에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보훈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계획안에 보훈의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예를 들면 용산공원의 상징이 전쟁보훈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도 그 근처에 있고 한테 사실 그런 문제인식이 좀 있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건지.

그리고 그게 시민공원이고 또 이제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공원이 될 텐데 국가의 미래에 대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개념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쟁기념관은 있고요. 거기에 보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도드라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바람인가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혹시 국토부에서 서울시한테 의견은 들어 보지 않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어떤 주체적 역할을 하는데 또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

분에 있어서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공원정책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낸 상황이고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 의견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오늘 충분히 개진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위원님들의 우려점이 다들 오늘 다 총망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이걸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저는 최소한 서울시 의견이라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정재 서울시 의견이 저는 개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오섭 위원 반대 의견이요.

○소위원장 김정재 반대 의견인데 이 ‘보훈’ 단어를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반대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추후에 다른 시설이 난립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아, 감안해 달라?

오늘 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용에 ‘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훈’이라는 단어 하나 넣는 것이고 또 조성추진위원회에 보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을 넣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은 앞으로 난립할 걸 우려한다는 그걸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 법의 취지나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 위원 공감은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라도 서울시를

좀 참여를 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더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위원님, 용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호국의 개념, 보훈 개념이 들어간 것도 결국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기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넣은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적 목적이 더 우선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여러 각계의 의견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국가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국가공원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 콘셉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 시민들도 가까이 있어서 이용 가능하지만 결국 국가공원이라는 개념은 전 국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엇그저께 계속 발표한 게 한강르네상스 2.0, 리버버스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시장 되시고 나서 이제 구상이 구체화됐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실 용산공원의 조화라든지 이런 게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소위원장 김정재 김민철 위원님, 그러면 서울시를 부르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의견 없으시면……

○김민철 위원 위원님들 의견……

○김학용 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 저는 오늘 해 주고 구체적인 계획은 믿고서 국가공원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국토부와 국가보훈처를 믿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시켰고 거기에 걸맞게끔 또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오늘 해 주시지요, 뭐.

○김민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그걸 꼭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달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 혹시라도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핀트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최소한도 우리 법안소위 할 때라도 국가보훈처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국장님, 10월 달에 용역 줬다면데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10월에……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그래서 관련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서범수 위원 이게 언제 나오느냐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걸 하시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국토부에 내용이 전달됐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그런데 저희가 3월 말에 해서 따로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가지고 차관님께서 이게 종합계획하고 나오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회의가 열릴 때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잠깐만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은 이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6월 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일을 아예 6월 5일로 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김학용 위원 그거 굿 아이디어.

○소위원장 김정재 그거 그렇게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날 법을 시행하는 걸로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0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1)

(16시42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입니다. 이 KIND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5000억 원인데 2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원공사는 2018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자본금을 출자받아서 22년 연말에 4436억 원으로 법정자본금 상한 5000억 원의 88.72% 수준이 납입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들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출 지원을 위해서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한도 상향 규모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해외투자 그다음에 2027년 경에는 자본 소요가 2조 원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또 공사채 발행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출자자의 출자여력—대표적으로는 정부 예산과 또 공공기관 등의 출자금입니다—과 또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출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자본금을 증액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현재 4436억 원이 출자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1306억 원이고 현금출자가 3130억 원인데 이 중에 정부에서 들어온 용도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건설공제조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납입한 현금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철민 위원님은 오늘 오전에 방송이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할 텐데 이 생각뿐이어서.....

○장철민 위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저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73)

(16시47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사항도 한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2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일단 공사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대부분의 사업 범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제정안은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해서 그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LX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중에 법적 근거 또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모두 미비한 기관은 공사를 포함한 4개 기관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금융개발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은 근거 법률에 그런 현황이 없다는 예시를 보여 준 겁니다.

6쪽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걸 현행법입니다. 현재 이 법의 12조에 설립 근거가 있고요. 현재는 특수법인이고요.

인력과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568명에 78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제 기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법상에 공사 관련 7개 조문 이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이나 관련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내용이 바뀌었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입니다, 제14조(공사의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서 현행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에 관한 부분에서 제9조에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해서 출연금,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조, 17조의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또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도 역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부분은 목적이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목적으로는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수정의견)입니다.

보시면 단체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측량학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견을 제기해서요.

수정의견입니다.

9쪽에 보시면 현재 현행법인 기본법 제12조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현행법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의견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의 목적에 보시면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적측량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행법에 맞춰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등기, 사무소, 정관에 관한 사항을 가져온 것인데요. 기본법의 내용을 옮겨 온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자구 수정도 큰 의미가 있는 자구는 아닙니다.

15쪽을 보시면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연구원·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문언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의 사업입니다.

제정안에서는 현재의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원용하되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또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가했고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법의 내용보다는 명확하게 업무 범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법의 규정 그다음에 공익 달성을 위한 공사의 업무수행 필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사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 협회 및 공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량학회는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적확정측량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위탁받은 사업 그다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엔지니어링협회는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이 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위탁받은 사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LX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을 했고요.

19쪽입니다.

둘째, 위탁사업의 범위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으로 수정을 해서 그 범위를 다소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이 내용을 담아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현행법과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위탁받은 사업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제정안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의 공간정보 정책을 지원하고 또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전체적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이게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수홍 위원 여기까지 반 하고 또 다음에 설명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다음 7번부터 이후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김수홍 위원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별게 아닙니다. 지금이 사업 범위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니깐요.

○金熙國 위원 전문위원 보고를 이해하실 위원님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법안이나 하면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지적공사입니다. 지적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공기관의 법적 설립 근거가 공간정보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고유의 설립 근거를 가지고 싶다, 이게 핵심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쟁점이 됐던 게, 지적측량의 범위를 공공기관인 LX하고 민간하고 충돌이 있어서 지금 LX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되는, 민간이 원하는 건 우리는 안 하고 다른 기능은 할게’.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안이 들어왔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관련 기관의 반대나 기재부의 반대로 삭제돼 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LX가 국가공간정보법에서 새로운 설립 근거법으로 빠져나온다, 장기판으로 치면 차, 포, 마, 상 다 떼고 줄만 빠져나온다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다 자기 설립 근거법이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설립 근거법은 이번에 해 줄게 이런 스탠스를 취할 건지, 원래 당신들이 호랑이 그래 놓고 지금 고양이 가지고 왔으니까 고양이를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만들어 줄게, 이 취사선택만 하시면 되고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희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보니까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한테 한번 설명을 일단 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 무슨 사장이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와 있어요?

○**김학용 위원** 아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다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니까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국회에 있든 여의도에 있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 리츠도 관련 전문가들이 사실은 다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러면 제가 호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국가보훈처도 지금 국·과장들 다 와 계시고 사실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전에 당

연히 얘기를 해야지요. LX 사장이……

○**심상정 위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백승호 과장은 가셨어요?

○**소위원장 김정재** 예, 아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그 사정을 얘기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에는 남기지 않고, 사과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없는데 어떻게……

○**소위원장 김정재** 그래서 심상정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오시면 하겠냐고 위원님한테 여쭙 보니까 그냥 하고 시작하자 해서 했는데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했었고.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있을 때 불러 주세요.

○**소위원장 김정재** 예.

○**심상정 위원** 아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셔서 제가 제기를 안 했는데.

○**소위원장 김정재** 본인은 아까 전에 따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자리에 불러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정재** 그래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오늘 제정법이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한번 리뷰를 해 보시고 제정법은 바로 한 번에 통과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조오섭 위원** 이 법안이 21년도에 공청회 했고 그 과정에 조명희 의원님이 또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많이 수정돼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가 돼서 와 버린 법이어서……

○**심상정 위원** 그리고 의원실마다 다 다니시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소위원장 김정재** 그리고 또 협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으셨나요, 위원님들? 협회에서 다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협회는 또 반대하는 의견을 다 다니면서 하던데.

○**장철민 위원** 그냥 하세요. 이거 더 논의한다고 여기서 뭘 보태겠어요, 더 뺄 것도 없는데?

○**소위원장 김정재** 아니, 우리가 사장 불러서 얘기 들을 거예요. 불러서 듣는 걸로 하고.

○**김민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 한번, 여기에 ‘설립목적 범위에서 규정’, 전문위원 수정의견인데 이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이 부분을 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목적에 수정의견을 왜 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적이에요, 위원님?

○김민철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제일 핵심은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자체를 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은 다른 데서 하는데 공사는 지원하라는 뜻이고요. 지금 앞에 제정안 원안은 구축·관리를 공사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을 이렇게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왜 그걸 수정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그건 다 살아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건 다 살아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오로지 바뀌는 건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고요.

○김민철 위원 아는데. 그것은 뺐는데. 그래서 제가 왜……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민철 위원 목적을 갖다 해 났는데 수정을……

○유경준 위원 잠깐만요. 이거 여러 번 논의된 것 같기도 하고 히스토리도 있고 한데 이거……

○김민철 위원 아니, 제가 수석전문위원 답을 먼저 한번 듣고 해 주시지요.

○유경준 위원 못 봤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9쪽에 보시면 주석 2번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법인데요.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정안이 있는데요. 이 제정안보다는 지금 이걸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행법을 그

냥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구축·관리 지원, 효율적 활용 이렇게 했더니……

○김민철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1조(목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아래로 뽑아 와서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내가 여쭙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수정의견 아니고 원래의 그 목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뭐 문제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걸 업계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김민철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걸 협회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 협회들에서.

○김민철 위원 아니, 뭐 할 때 그냥 같이 하지.

○서범수 위원 차관님, 국토정보공사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하고 갑과 을의 관계예요, 경쟁 관계예요, 같이 가야 되는 관계입니까? 그것부터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서로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 다 빠진 거지. LX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빠지고 지금 산업협회 이야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기관 예를 들면 산업협회하고 LX하고의 관계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관계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워 가지고 절뚝절뚝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과연 차관님 생각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에는 산업협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이것은 정확하게 하면 공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여러 협회들과 상의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협회도 받아들일 수 있고 공사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온 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이 현행법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독립문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거.

○김수홍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김정재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희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좀 전에는 지적공사였다가

또 공간정보의 역할이 커서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할 때 민간 지적측량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에 떠 주면서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하면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책임을 더 충분히 하고 그게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필요한 건 다 빼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정안은 정말로 공청회라든가 관련 업계의 내용을 수용해서 국토정보공사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정도의 의견에 어떤 일치점을 보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고, 전문위원이나 정부도 두 업계와 정보공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대한 봉합하면서 가려는 노력이 있고, 이 예의 하나로 옛날에 한국부동산,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협회하고 엄청난 대립이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감정원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간업체한테 모든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늘 논의해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시간도 많이 없다고 하니까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양이인데 호랑이가 될 가능성은 이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정만 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상당히 조율을 해서 현실적인 안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또 따질 수는 있는데 그냥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오늘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잠깐……

○유경준 위원 잠깐, 반대 의견을 먼저 말하고, 부르든지……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시지요.

○유경준 위원 지금 이 공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국토정보 구축하고 국가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게 공공재적 성격이나 민간재적 성격이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

재적 성격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주로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받고 거래하고 하는 영역도 필요하지만 기본 정보나 최소한의 정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수립하는 건데 여기에 목적을 이렇게 바꿔 버리면 ‘통합적 구축·관리’를 ‘구축 지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을 ‘지적측량’으로만 해 버리면 독립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뒤요. 그거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

○소위원장 김정재 보니까 시택에서 집 나오는 거에 의의를 둔 것 같아요.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이게 정상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가려고 하면 무지 어려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능이 지적측량은 다 민간한테 넘겨줘 버려.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민간이 측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심판 기능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측량 기법을 비수익 사업을 공사가 다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은 민간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는 비수익 사업이나 공적 임무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4000명이 넘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걸 독립을 시킬 실익이 없는데 지금까지 수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국토정보공사법의 설립 근거를 새 법으로 해 줄지 말지 그냥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빈껍데기 갖고 하는 법 이게 무슨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이걸데 그냥 시택에 한 3주년 살다가 탈출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정법을 한 30분 얘기하다 바로 통과시키는 건 소위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음 주 되면 또 열리니까 오늘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큰 틀에서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기왕에 오셨으니 한 5분이라도 얘기 듣고 나가시라고 그러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올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제가 이거 나머지 설명하는 게……

○소위원장 김정재 참, 7번부터 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아주 금방 끝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건 아까 전에 너무 간단한 거라고 해서 눈으로 다 읽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소위원장 김정재 7번부터 12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24쪽입니다.

제7조가 공사의 임원, 제8조가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입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별문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공사의 제정은 중요합니다.

제9조가 자금의 조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이런 게 있고요. 보조금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출자할 수 있고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이걸 당연한데 이번에 또 채권 발행을 새롭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잉여금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수정의견으로만, 28쪽에 보시면 수입 부분에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결국 기재부가 출연금을 줘야 성립이 되는 조문인데 의미가 없다고 봤고요.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이 별도 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으로 했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인데 이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채권이자 소멸시효를 2년으로 했는데 2년의 입법례와 3년의 입법례 여러 가지가 갈립니다만 저희 수정의견을 3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공사에 대한 재산상의 특례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그리고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현시점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고 결국은 국유재산특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실익이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했구요.

17조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공사도 이런 조항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철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공사는 그 성격이나 재정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도 역시 매입의무의 면제는 삭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비밀누설 등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른 법률의 준용, 벌칙, 과태료는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체계·자구만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의 부칙입니다.

부칙의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을 하고요. 종전의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정보공사로 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종전의 기본법에 따르도록 했고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법의 타 법 개정을 이 부칙으로 정의해 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님들 7번부터 12번까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LX도 공공기관이고 정부출연기관 이런 기관인데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칫 이런 공공기관은, 아무리 시장형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해 놓는 게 합리적인 입법인지가 나는 좀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러나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국가의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을 빼버리는 게 합리적인 의견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연금만 뺀 겁니다.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별도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보조금은 별도로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출연금은 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너무 세서, 왜냐하면 국토정보공사는 현재 이윤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면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정말 출연금이 들어갈 정도로 어렵게 되면 그때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 사정상 저희들이 출연금 조항을 고집했을 때 앞뒤로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 있어서……

○김수홍 위원 기재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법의 체계상 내가 볼 때는 기재부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고 현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 규정을 넣는 걸 반대하는 그 자체가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한다는 의견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정재 예,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안 주는 게 현재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김정재 출연금.

○유경준 위원 출연금을 안 주고 보조금은 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로 전환하면서 지금 민간이 구축하는 영역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정리되면 과거에 했던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현재 이 규정대로, 사업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현재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목적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니, 그게 현재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현재대로 해도 이윤이 남는다는 거지요.

○유경준 위원 현행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니까 제정안을 조금 높였는데요. 그것을 현재와……

○유경준 위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거기 목적에도 보면 지적측량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측량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게 가장 주된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적측량이라는 게 목적에도 들어가 있고 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측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것만 하면 수익은 계속 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홍 위원 전문위원, 하나 더 확인하면 LX는 수지차 보전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아니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못 넣는……

○김수홍 위원 아닌데 그래도 출연금은 해 놓고 적자가 발생 안 하면 안 해 주는 거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출연금을 뺀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조오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그냥 법으로 정해 놓고 안 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뭐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법을 다시 바꿔서 준다? 그것은 조금 궁색하잖아요.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정재 그런데 정부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김수홍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받게 되면 향후 과정에서 이것 안 받아도 될 것을 굳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법사위에,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뭐가 왔냐면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원장한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건은 올리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부처가 확실하게 반대하는 건, 예를 들어서 김수홍 위원님께서 이 법안 반대하시려고 그러면 출연금 꼭 넣으라고 하고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 이것은 홀딩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법안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한 부처가 죽어라고 반대하면 사실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해관계 다 정리해 오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출연금이 그렇게 부득불 정리된 것 같고 일단 어차피 이게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걸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것 관련해서 7번에서 12번까지는 서범수 위원님 마지막 여쭙보시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 한 가지만, 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은 정부의 출연금만 빠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32페이지 보면 이 보조금하고 이 보조금하고 어떤 보조금인지 이야기……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같은 겁니다. 10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범수 위원 10조가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10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서범수 위원 이 10조의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이야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이것은 기재부가 주는 거지요.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위에는 빠져도 된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래서 위를 삭제해도 보조금은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개진한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이 바깥에 와 계신다니까 잠깐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동안 심상정 위원님께서 아까, 백승호 부동산투자제도과장입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잘못을 한 부분 그리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다는 부분까지 저희에게 다 드렸고 아까 사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그냥 가도 좋다 이래 가지고 세종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혁진 실장님께서 대기

중인데 권혁진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 먼저 권혁진 실장님 말씀 좀, 심상정 위원님 얘기 들으시고.

○심상정 위원 잠깐요. 제가 사과 들으려고 다시 보자고 한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문제는 아까 제기를 다 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거예요.

○소위원장 김정재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을……

○심상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은 저하고 말씀한 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좌중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2분 늦게 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존중합니다. 열정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많이 적을 수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많이 안다고 그래서 반드시 옳은가 또 좀 덜 안다고 해서 틀린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들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을 보통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4선인데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발언권 승인도 받지 않고 그걸 받아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위원들, 여기 입법 논의 권한은 위원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무슨 사과받거나 그런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입법 심사라는 것은 많이 알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저 없는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더니 사과를 제가 수용을 하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더불어서 심상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셨는데, 제가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자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Q&A가 바로바로 즉석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결례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심상정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특별히 또 하셨으니 와서 공식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회의가 좀 일찍 진행되면서 시작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심상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말씀, 우리 위원들이 거의 공히 같은 뜻이니까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LX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지금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이젠 3분 안에 간단히 말씀만 하시고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지금 오신 거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예.

○소위원장 김정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서 왜 오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렬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이 사실은 디지털경제,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 공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와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방재라든가 국유재산관리라든가 도시관리 등등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별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위탁받으려고 하려면 개별법을 다 고쳐야

됩니다, LX가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든 준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수탁 규정이 있어야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독립법으로 하면 수탁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적측량은 수수료를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정보 서비스 부분은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지적 수수료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일부 보조,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행법에 그게 없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간정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큰 내용이 되고요.

또 관련 업계에서 일부 반대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업체들이 측량과 지질정보 서비스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업체는 빅데이터라든가 공간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업역 관계에 대한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저희 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조직법하고 그러한 것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업역을 그대로 이 조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회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예, 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

15.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

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

1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

(17시30분)

○소위원장 김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5건의 제정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및 입법의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는 ‘요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실지로는 워낙 제정법이 커서 저희들 자료가 3개가 돼 있습니다. 요약 그다음에 제정안 조문 대비표 그다음에 본판입니다. 그런데 본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요약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정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인구 집중 그리고 또 전체 인구수 감소에 따라 지방소멸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는 2020년 9월에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고 혁신산업 및 기업지원 정책들이 연계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5곳의 특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5개 광역시에 3억 원씩 기본계획 수립

또 5개 광역시에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실시계획 수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향후 소요 예산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법률의 지원사항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심융합특구의 개념은 계속 반복적이지만 지방 주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 조성 및 부처 간 다양한 기업지원을 융합하고 규제 완화 등 특례를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특구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지역에는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주변지역에는 여건에 맞게 개별법에 따라 특구연계사업도 진행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업의 육성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청하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다양한 사업 특구·지구들의 중첩적인 지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 도심융합특구는, 특구 자체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의 중점인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특구개발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연계사업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수도권 외 5개 광역시, 현재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만 보시면 상무지구 85만㎡이고요, AI·자동차 등 특화산업 연계와 직주근접 주택 그다음에 청년 기숙사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 실증공간을 제공해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대구·대전·부산·울산은 제외하고요.

6쪽입니다.

‘현재의 법령에서도 특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는 도시개발법이 유사한데요, 이 법은 수익성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아파트 공급 중심의 개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심융합특구가 목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단 조성사업이지만 주로 도시 외곽에서 또 입주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별로 크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성장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의 거점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 도심을 광역권 성장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특구 개념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과 차이가 있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는 수정의견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너무 많고 여러 조문이 있어서 수정의견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기존 법체계를 고려해서 복합된 공간의 조성에도 모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총 6개 장, 46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토록 하고요.

10쪽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업 진행순서로 보면 시·도지사 등이 특구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고 장관이 지정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도지사 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시작되고요, 조성 완료 후에 장관의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되고 규제샌드박스 특례의 부여 지원 대상이 되며 시·도지사는 진흥재단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가 제공되며 부담금 감면, 조성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의 그림을 보시면 핵심은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행위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행위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조성 및 준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수정의견은 사실

상 핵심적인 내용을 다 추려 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술적인 사항들은 수정의견에 다 정리했고요, 여기서는 제정안에 있는 중요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부 제정안에서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이미 해당 규정이 있고 또 중기부 소관임을 들어 불수용 입장이고 수정의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용은 아예 삭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안에서는 특구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수정의견에서는 특히 예타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안에서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실지로는 이 지방위원회가 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 시·도지사가 승인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원화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은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 개발사업의 수혜자는 사업시행자나 지방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비용 부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일정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저희 수정의견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조세 감면입니다. 조세 감면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불수용 입장이어서 저희는 실익이 없다고 봐서 조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따른 장관과 시·도지사의 주요 권한을 말씀드리면, 장관의 권한은 특구의

지정·지정해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지정, 특구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그다음에 준공인가, 이것이 국토부장관의 권한이고요. 시·도지사는 특구의 지정 신청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작성이 주요 권한이 되겠으며 마지막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소위원장 김정재 여기까지 하시고 정부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까지 논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것이 제정안이라서 내용이 좀 많아서요.

위원님, 오늘은 이렇게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리뷰를 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제정안이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이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오섭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궁금해서……

○소위원장 김정재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희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오섭 위원 조성비용 국가 부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비용 국가 부담을 전혀 아예 삭제, 원안에 대해서는 불수용인데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닙니다.

○조오섭 위원 수정안도 불수용?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기재부 국장님이 와 계셔 가지고……

○소위원장 김정재 참고로 지금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경제예산심의관 국장님과 기재부의 국토교통예산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동일 국장님 계십니다.

○조오섭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아까 찬성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찬성인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니, 기재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의견에 반영했다는 얘기이고요. 조세 감면은 실제로 기재부에서 본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그것은 삭제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오섭 위원 조세 감면은 뭐 그렇고 국가 부담하고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정재 김희국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김석기 과장님!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김석기입니다.

○金熙國 위원 여기 ‘융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융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저희가 이 경우에 도심융합특구라고 한 것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관리 세 가지 측면에서 융합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세 가지 측면의 융합을 보았습니다.

○金熙國 위원 5페이지 보면 울산의 경우에 ‘산·학·연·관 혁신허브 구축’이라고 써 놔는데 산·학·연·관 혁신허브 구축도 융합의 하나입니까?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예, 울산의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해당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고 UNIST와 같은 우수 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서 융합 측면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1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 혁신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산학연관 등의 클러스터가 뭉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혁신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울산의 우정동에 혁신도시 만들어져 있지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우정동 혁신도시하고 융합특구하고는 다른 겁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울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

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울산 KTX 역세권, 동쪽으로는 우정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약한 30km 정도의 벨트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통연결망과 함께 UAM이나 자율주행셔틀과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공단, KTX 역세권, 테크노파크, UNIST, 혁신도시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간 창출을 하고 싶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융합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자체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이 특구에 입주 내지는 정주 내지는 상주하는 그 업체들 간의 협력 체계입니까?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 김석기** 각 부분 간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재부, 산업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토부, 중소기업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울산광역시와 울산 동구청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나 주변 UNIST와 같은 대학들이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거의 안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군요.

알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특별법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냈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입법으로 추진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떠한 지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개의 지자체나 몇 개의 지역에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탁 내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지자체에 이런 계획을 전달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사업도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면서 지자체는 어떠한 입장들을 냈더라는 의견을 해 주면 좋은데, 기재부 의견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재부 의견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할 수 있는 집행의 실체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하실 때 기

재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원발의 법안은 기재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법을 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제기된 내용 중에 저도 사실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기재부가 불수용한다는 마지막 조성비용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는 분명한 이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이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관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별 부처마다 다 상계되어 있고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처 간 협업과 융합하는 어떤 정책 효과성을 만들어 내 보자라는 콘셉트로 이 도심융합특구의 아이디어가 발전이 됐고, 그래서 사실 3년 전에 이미 저희 대전 동구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5개 대도시에 지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전도 사실은 조금 선도적으로 일단 계획들이 진행돼서 실제로 대전시의 행정계획의 용역이 거의 90%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법이 못 가다 보니까 그 계획을 완료시키지 못하고 이후에 완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정말 이번 3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성비용 국가 부담에 대해서 사실은 기재부가 과거의 입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까 전문위원도 산업입지에 관련된 법도 설명하시고 도시개발법이나 여러 법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게 약간 단지형 개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째밀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도심융합특구는 사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입니다.

여기를 다 밀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도심이라서

도로나 다른 기반시설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기재부든 다른 정부에서 크게 들어갈 돈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심의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정부부처에서 하는 정책들의 효과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시설이 사실상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단이나 기존 도시개발법상 택지개발지구랑은 완전히 콘셉트가 다른 거지요. 오히려 그런 기반시설보다 그걸 융합하는 시설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인데 그 기초가 되는 조성비용 국가 부담……

저는 솔직히 기반시설은 별로 안 중요해서 이거를 반대하면 오히려 수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축물들, 그런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정말 특구 지정만 해 놓고 이후에 부처 간 협업의 그런 고리를 완전히 빼 버리면서 이걸 사실 정말로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는 특구들과 다른 국토부나 부처들을 거의 기망하는 수준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조성비용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저는 사실 그 논리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야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다 저도 수용할 수 있더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재부의 국장님,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장철민 위원 그 논리를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재부, 왜 이 부분까지 반대하는지.

○소위원장 김정재 기재부 김동일 국장님.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입니다.

아까 기재부하고만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법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로 지정하는 특구가 몇 개가 있냐 하면 50개가 있습니다.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특구로 지정돼 있는 게 748개입니다. 우리나라 특구 왕국입니다. 특구 천국입니다.

이 특구법들이 다 개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그런 혁신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특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해서 안 하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안에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특구가 있는데 또 특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공간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특구를 만든 다음에 특구만 만들어 놓으면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사업들이 들어가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부처 내에 굉장히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법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부처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 특구에 넣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 내에서 상의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법이 뭐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포함해서 다른 부처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되었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비용의 국가 부담을 기재부가 왜 반대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법에 보면 도로, 철도, 통신, 전기시설, 용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있고요.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걸 비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굳이 말씀하셔서, 공공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있다고 치면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법에다가 ‘국가’라는 말을 주어로 넣어 놓게 되면 마치 국가가 사업시행주체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지자체가 인정하

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체계하고 법 체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정재** 제가 보니까 국정과제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제……

○**장철민 위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지정된 게 3년 전이거든요.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거를 그렇게 웃으면서 보고할 일입니까?

국장님, 3년 동안 지정하고 용역 뭐 하고 지자체들이 다 준비하고 그동안 정부부처들이 놀았다는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재부의……

○**장철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아셨다고 했는데 이 법이 나온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됐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노셨다는 게 자랑이에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놀았다고 자랑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데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을……

○**장철민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이거 지정할 때는 부처 간 협의 안 하셨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이기는 하지만 부처 간 협의를 다 했고 사실은 저도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지금 법률 말씀이신 거예요? 법이……

○**장철민 위원** 물론 그때 지정을 하면서 법안도 준비를 했지요.

○**소위원장 김정재** 국장님, 잘 들릴 수 있도록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더 잘……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랑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협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소위원장 김정재** 법안 협의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예,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사업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하고 법은 다른 얘기니까 일단 말씀……

○**장철민 위원** 사업하고 법이 왜 다른 얘기지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법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인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제 개인적인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필요성에 의해서 부처가 요구를 하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사업 자체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법안 협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장철민 위원** 예를 들면 조특법이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세감면 혜택 같은 것들에 대한 부처 협의가 뭐 늦어질 수 있다고는 봐요. 그건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법들은 어쨌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 특별법에서보다 기재위 쪽에서 이 조세 관련된 법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협의 과정에 뭔가 조금 지연이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정부터 지금 이 특별법이 발의되고 지금까지 수년이 흘러온 과정,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공히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뭔가 융합적인 정책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재부가 이렇게까지 정말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해도 되는지 저는 너무 지금 좀 황당한 수준이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저희가 기재부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되는 내용들도 아니고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오늘 몇 가지 쟁점들, 조성비용 국가 부담 딱 이 부분 말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그렇게 충분히 필요한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차피 물리적으로도 이것 통과를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딱 이 사안 하나입니다, 기재부와 실제로 이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 저희가 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저는 이것은 하루 이틀이라도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정확하게 부처 협의를 끝내고 올 것을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예.

서범수 위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울산 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재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사업이 벌써 2020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사업하고 법률하고는 다릅니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국토부 단독으로 했겠느냐. 분명히 기재부하고도 의논을 했을 거고, 다 아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 검토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률하고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리면 상당히 황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각 지역에서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법이 없는데 되겠느냐라는 인식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 특별법 내지는 도심융합특별법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늘상 가다가 찢뜩찢뜩할 수 있다, 이게 절름발이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걱정들이 참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기재부에서, 물론 기재부의 입장은 있겠지요. 기재부의 입장은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교육책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의 하나의 모티브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티브인데 이걸 너무 중앙 시각에서, 국가 예산을 다루지만 그것만 너무 생각할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잘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기재부에서도 고심을 해 주시고 차관님도 기재부 쪽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차관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

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오늘 조성비용 국가 부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기재부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정사업은 법 없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시고, 사실 저희 포항에만 해도 특구가 제가 갖고 온 특구만 해도 한 7개 돼요. 정치인의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구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원래 정부에서는 3개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다 별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10개로 늘어나고 이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폐해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직 포항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학과 산학연이 또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잘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법안 논의는 한 지 얼마 안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논의를 하시고 저희가 오늘은 제정안이니까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정안을 전체를, 어차피 저희가 제정안을 다 리뷰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22일날 또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몇 번 향까지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지금 일단 오늘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1, 2번까지.

오늘 목표가 이렇게 낮았나요, 여기까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다 끝낼까요? 그러면 끝 내지요. 위원님 그러면 쪽 가겠습니다.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오늘 심사를 더 계속할까요, 어떻습니까? 대전, 울산만 남고 다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의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 6시 30분까지 좀 더 하고 종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6시 30분까지 끝내집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강조드리면…… 즉 일회독은 하셔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김정재 일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오늘 많이 이석을…… 원래는 오늘 한 5시 반 늦어도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어차피 축조 하려면 일독은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지금 2번까지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이제 3번부터 설명드리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대강 목표를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다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 하셔도 되는 이유가 조문을 한번 보시라는 거지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의견 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성비용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되고 제가 한번 즉 설명드리면……

○소위원장 김정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3번까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30번까지 지금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이 짧은 시간에 30번까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요약집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요약으로 할 겁니다.

○장철민 위원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다음에 하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일회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일회독만 이 요약집을 가지고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들, 혹시 중간에 좀 이상하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13쪽입니다.

제명, 목적입니다. 결정된 걸 그냥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제1조(목적)은 지금 수정의견과 같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

역 중소기업 이러한 사항들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제2조(정의)는 도심융합특구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은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한다는 것이 적용범위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잠깐 보시면 아까와 중복되지만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발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수용을 했고요. 23쪽에 보시면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은 제7조를 보시면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 사항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법의 실질인데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입니다. 시·도지사 등이 특구의 지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에 필요한 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제안하면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저희들이 일단 수정의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이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30쪽, 제2항입니다. 특구를 지정할 때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등 한 네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특구를 지정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법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제안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이런 특구의 지정이나 변경지정, 지정해제, 실시계획,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4쪽에 보시면 특구의 위원이 되는 사람들이 쪽 나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니면 제10호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4항에 보시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해서 통합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위원들 구성을 다채롭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제6항입니다—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특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실익이 없다고 봐서 삭제했는데요.

41쪽, 제11조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 지정의 효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된 효과를 쪽 설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쪽입니다.

특구개발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행위제한의 전형적인 조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

해서도 행위제한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이 있었지만 특구연계사업은 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아서 저희들이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을 지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장관은 시행자가 특구 지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형적인 조문이어서 저희들이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입니다. 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이상의 자가 50% 이상을 출자해서 만든 법인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은 공공 시행자가 시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사업에 실제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아까 부동산 공모리츠를 한번 이런 사업시행자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공공 시행자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고요, 이런 공모리츠는 토지를 공급받는 자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건데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등은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승인을 받을 때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지만 일부 제정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특구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시·도지사가 승인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장관이 실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감독권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권자입니다.

일부 원안들은 실시계획의 작성권자는 전부 다

시행자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시·도지사가 역할이 전혀 없어지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등이 동시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 법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시계획 작성권자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시에 허가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일정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의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제 17조 보시면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입법 내에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구요.

60쪽 제일 위에 보시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까지 의제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보시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의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입니다. 아까는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함께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 등이 장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고, 이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실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수립 시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청취 또 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런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흥 위원** 이런 입법례가 있어요,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같이 하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문성요** 예, 산입법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은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시·도지사 권한을 충분히 좀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5쪽 넘어가겠습니다.

시·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요,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타당한 조치로 봤습니다.

67쪽입니다.

19조를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그리고 20조에 보시면 토지수용이 있습니다.

68쪽에 보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 그리고 22조에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입법례를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법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정의견 24조를 보시면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등 이런 특구 지정을 정부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융합특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부는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임시허가나 또 규제 적용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장관은 이런 특구진흥재단을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방법 중 하나입니다만 임시허가, 실증 등을 위한 특례 지원 역시 다른 입법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6조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입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진흥재단 그리고 기업종합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27조, 28조입니다. 역할은 조문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 센터를 진흥재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장관이 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좀 달리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주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0조를 보시면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2조에 전학·입학 편의 제공, 33조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찬성 의견은 없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고려하고 기존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입니다.

아까 특구 조성비용의 부담입니다.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건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조성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원칙을 일단 천명하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2항을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기·가스는 공급자,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3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 및 주민 재정착 등 공공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국·공유재산의 처분입니다.

35조를 보시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이 쪽 복잡한 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입법례에 따

라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89쪽에 보시면 그중에 하천에 관해서는 검토보고 보시면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도록 했고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90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국·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등 특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점용료·비용 등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중에 조세 감면은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역시 이전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것은 준용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준용 규정은 바로 저희들이 직접 수정안으로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조문을 바로 보시면 보고 및 검사입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 열람 및 보관 등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보고·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 그랬는데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검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승계는 당연한 조문이고요, 권한의 위임·위탁도 위낙 전형적인 조문이어서 저희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의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구심의위원회 위원, 총괄계획가, 수탁법인, 단체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업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형질변경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입법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벌칙의 수준과 과태료의 수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1조는 준비기간이 있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요, 제2조에서는 장관은 25년 12월 31일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금 기간을 두어 부여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지난 정부에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을 일단 종합발전계획으로 그때까지 보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법률의 개정은, 토지이용규제법은 타 법률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08쪽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별법의 별표를 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이 법률은 타 법률로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윤창현 의원 법도 동시에 그냥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굉장히 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을 좀 듣도록 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정재 아마 미리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지금 정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의결정족수가 일단 부족합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제정법은 축조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리부를 한번 했고요. 오늘 요약본을 가지고 했는데 100여 페이지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되는 것은 몇 가지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재부의 국장님, 과장님 다 나오셨는데 오늘은 기재부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뿐만 아니라 안에 보면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부라든지 각 부처마다 각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또 수정의견을 낸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것들이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음 심사 때는 이것을 계속 심사를 하고 쟁점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의견 또 주시면 너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심사를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오늘 국·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민철	김병욱	김수홍	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심상정
유경준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이	원	재
국 토 도 시 실 장	문	성	요
주 택 토 지 실 장	권	혁	진
국토정보정책관	박	건	수
토 지 정 책 관	남	영	우
기술안전정책관	김	규	철
해외건설정책과장	최	신	형
공공주택추진단장	박	재	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 원 정 책 과 장	전	성	배
기 획 재 정 부	김	동	일
경 제 예 산 심 의 관			
국 가 보 훈 처	장	정	교
보 훈 선 양 국 장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	정	렬